

#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서

수신자 성명 :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님

주 소 :

발신자 성명 : (주)아이버스터 법무팀 김병조본부장

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7길 34, 5층(서교동)

연락처 : 010-2542-3916

제목: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

발송자는 (주)아이버스터 대표이사 남동훈의 위임을 받은자

위임인의 상표권 내용

상표명 : 그립톡

등록번호 : 제40-1500633호 / 제40-1527813호 등

소유자 : (주)아이버스터 대표이사 남동훈

안녕하세요 (주)아이버스터 법무팀 김병조본부장 입니다.

귀사가 사용중인 "그립톡" 및 "GRIPTOK"은 (주)아이버스터의 대표 남동훈에 의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, (주)아이버스터 대표이사 남동훈이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**대법원 2012.5.24선고2010후3073** 판결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(이 사건 "그립톡" 및 "GRIPTOK")를 검색엔진등에서 키워드로 사용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의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(이 사건 "그립톡" 및 "GRIPTOK")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, 동일 혹은 유사한것을 사용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상표법 제66조는 "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(주)아이버스터 혹은 상표권소유자 남동훈의 허가없이 "그립톡" 및 "GRIPTOK"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상표법에 의하여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/형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안타깝게도 귀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이 (주)아이버스터의 "그립톡"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 따라서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**민사상 불법 행위 및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**에 해당될 수 있으며, 발송인은 귀사를 상대로 민,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귀사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상표법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(상표법 제 230조),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.

귀사가 사용중인 "그립톡" 및 "GRIPTOK"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알리는바, 등록상표 사용 및 재발방지 각서, 그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, 본 문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시,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제반비용을 포함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\* 상표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접수가 되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**

**상표권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은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지며, 이를 토대로 민사재판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### 손해배상금 청구 합의서

(주)아이버스터 및 남동훈과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는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 각 조건을 합의하고, (주)아이버스터 및 남동훈은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가 아래 각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본 사안에 대하여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에게 민·형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1.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는 본 합의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(주)아이버스터에게 5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- 계좌 : 카카오뱅크 7979-85-69429 남동훈

2.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는 합의 이후 동일 및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시 민·형사 의 책임 및 상관행,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3. (주)아이버스터와 남동훈, 플레인톡 김유진 대표는 본 합의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내부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행하였음을 확약한다.

4. 의무를 위반할 경우(본 합의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위반한 본 합의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별로 1억원을 지급한다.

5. 본 합의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하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6. 본 합의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외부발설을 금지한다

본 합의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원본 을 작성하고, (주)아이버스터, 남동훈 및플레인톡 김유진 대표 각 당사자가 기명,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주식회사 아이버스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7길 34, 2층(서교동)

대표이사 남 동 훈 (인)

남동훈 (인)
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, 104동 1201호(마두동, 백마마을)

플레인톡 김유진 대표 (인)

2023. 10. 21.